

# 「평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 사 경 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1. 11. 28(월) 평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11. 12. 19(월)
- 다. 상정일자 : 2011. 12. 20(화)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 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주민생활지원실장)

-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을 장려하고, 타 시·군의 화장장을 사용하면서 관내 주민보다 비싼 사용료를 지불하는 우리 군민의 부담을 경감하고, 기초생활수급자 및 행려사망자 등 취약계층 장례비용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.

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장동기)

- 본 조례안은 화장문화를 장려하고 타 시·군의 화장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화장장려금 지원을 위한 제반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임.

○ 주요 내용을 보면

- 장려금 지원대상을 평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해 화장하거나 분묘를 개장해 유골을 화장한 경우로 하였으며
- 지원금액은 일반 군민의 경우 화장장 소재지 지역주민 사용료 보다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- 본 조례안은 화장시설이 없어 타 시·군의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우리군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, 화장을 비롯해 장례제도에 대한 개선과 함께 좀더 적극적인 시책을 개발 추진해야 할 것임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**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**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**

**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

**【붙임】 평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 1부**